

最大發明家가 最拙事業家

—에디슨에의 포드의 評—

今世紀의 發明家라면 토마스 알버 에디슨(1847~1931)를 첫손꼽는데 주저할 사람은 없으며 그가 겪은 特許紛爭逸話를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가 學校에서 低能兒 取扱을 받은데 憤慨하여 어머니로부터 家庭教育을 받다가 12歲때에 列車內의 新聞팔이를 하면 일이나 어느날 汽車에 치이려는 驛長의 아들을 救해준 因緣으로 그 역장의 好意로서 電話技術을 배워 通信技術者가 되었고 그 教育이 바탕이 되어 自動中繼機를 비롯한 通報印刷機등을 발명한 것은有名한 이야기들이다.

그는 이 같은 발명으로 얻은 資金으로 23歲때에 研究所를 세웠고 이 터전이 이른바 에디슨의 發明工場이된 것이다. 그가 生涯를 통하여 取得한 特許는 總 1,300餘件이고 그 가운데 美國內에만도 1,093件이나 登錄되는 엄청난 숫자였다.

印字電信機, 蓄音機, X線透視鏡, 알카리蓄電池等 鐵道, 通信, 航空, 化學에 이르기까지 그가 발명으로 社會에 貢獻한 業績이야말로 어느 政治家나 名經倫家도 이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특히 에디슨의 發明代名詞로 알려진 白熱電球는 그만큼 特許紛爭史의 代表格이며 사회에의 공헌에比하여 實利를 얻지못한 발명도 드물 것이다.

이 訟事는 백열전구에 先發明者가 있다는면서 시작하여 7年戰爭이라고 불릴만큼 긴 세월과 200萬弗이란 巨額을 蕩盡하여 끝내 勝訴는 하였으나 財產上으로 마지막에 남은 것은 無로 還元하고 말았다.

이 電燈의 訟訟焦點은 電球內의 카본필라멘트였다. 톰슨 하우스턴과 웨스팅하우스 電氣工業會社를 相對로 한 1885년부터 1892년까지의 7年訴訟事의 爭點은 대체로 3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같은 쟁자와 契機는 발명자인 에디슨이 1878년, 즉 提訴 7年前에 에디슨電燈會社를 設立하여 製品을 生產하고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特許管理的對應策이 허술하였고 또한 그동안 톰슨이나 웨스팅하우스등이膨大하여졌기 때문에 訟事自體도 長期間이 걸린 血鬪였으며 終局에 남는 것은 발명이란 荣譽뿐이었다.

訟事의 爭點인즉 에디슨의 特許出願以前에

(1) 白金을 發光體에 使用하고 電氣를 통하여 발광시키는 전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2) 글라스球內에 硝素ガス를 넣고 電極으로하여 炭素棒를 사용한 발광체가 이미 있었다. 즉 그 特許가 소야와 맨이라는 두 사람에게 共同發明으로서 許與되었으며 그 特許權을 웨스팅하우스가 買受하였다.

(3) 真空글라스管內에 탄소의 가느다란 필라멘트를 封入한 램프가 에디슨의 特許出願 20餘年前에 實在하였다. 즉 獨逸人 케넬이 美國으로 移住한 후 真空글라스管으로된 램프를 製作하였으므로 이것이 에디슨의 特허보다 先行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所管法院인 セント루이스聯邦法院은 에디슨의 전구는 特허가 될 수 없다고 敗訴를宣告하였으나 에디슨의 必死的反擊은 上級法院에서 特허가 認定되어 勝訴로 마무리 지어졌다.

그 判決要旨는

(1) 材料代替는 通常의으로 特許性이 있는 발명으로는 생각할수 없으나 白金에 대체하여 탄소를 사용하였음은 特허성이 있다.

(2) 탄소봉과 필라멘트는 單純히 굽기의 差異하겠으나 直徑이 折半以上 差異가 있으므로 實用의 인자이가 있다.

(3) 最後에 實在했다는 케넬의 램프는 未完成의 實驗에 不過하여 에디슨特허에 선행할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에디슨이 비록 最後 勝訴로 發明性은 인정되었다해도 勝訴時點의 에디슨電球工場의 總利益金은 70萬弗이었으므로 訟訟費用 200萬弗을 充足할수는 없었으며 特許存續期間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特許證의 發行은 訟訟에의招待狀에 不過하다』고 慨嘆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에디슨은 交流電流戰爭에 한발 뒤쳐 드러나는 에디슨電球會社는 G E로 넘어갔으며 그때는 한株의 株式도 갖지 못했다.